

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감사 결과 (실버택배사업 운영실태)

- ◆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실버택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도출
- ◆ 실버택배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개선방안 모색
→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행정 구현에 기여

I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4. 8. 8 ~ 2014. 8. 25
- 대상기간 : 2013. 1월 ~ 2014. 7월
- 감 사 반 : 감사실장외 1명
- 감사대상 : 실버택배사업 관련 전반
(사회복지과,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)
- 중점 조사사항
 - 사업운영 실태
 - 보조금 사업집행의 합법성
 - 사업예산 집행의 적정성
 - 기타 수익금 사용내역 등

II 감사결과

☐ 감사 총괄현황

구분	행정상 조치		재정상 조치(환수)		신분상조치			비고
	기관경고	주의	년도	금액(원)	중징계	경징계	훈계	
실버택배사업	1 (센터)	2 (구)	-	-	1 (센터)	2 (센터)	3 (구,센터)	

1.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

-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2013년도 실버택배사업 예산이 조정(축소)되었음에도 「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사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,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음

2.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

-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2013년도 실버택배사업 정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사업수행에 따른 모든 수입과 지출이 정산금액과 일치되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사업정산서 상 일부 금액을 누락시킴으로써 실제사업금액과 정산금액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등 「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사업정산서 작성·보고 업무를 소홀히 함

3. 보조금 예산집행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

-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2013년도 사업예산 중 서틀이용료 등으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을 타 용도로 지출하는 등 「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 제21조 규정에서 정한 보조금 타용도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,
- 2013년 성수기(설, 추석) 물품배송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비용을 인건비 항목이 아닌 운영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시 및 구청장의 승인절차를 받도록한 규정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였고
- 아울러,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2013년도 실버택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참여자들의 실적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중 일부를 적립한후 사업예산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함

4. 회계서류 작성·보관 업무 부적정

-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수입결의서 작성시 실제 수입과 금액이 동일하여야 함에도 수입결의서 금액이 상이하게 작성되었으며, 일부 수입금액의 경우 수입결의서 작성을 누락함

5.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·감독 소홀

-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노인인력센터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「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」 제20조에 규정에 따라 거치도록 한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 절차와 보조금 적정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2013년도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
- 일자리창출과 및 사회복지과에서는 「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9조 규정에 의거 센터 전반업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조금 신청절차 부적정, 보조금 정산서 작성 부적정, 보조금 집행시 교부목적 외 사용, 예산 무단 전용 등 회계질서 문란 등의 위법·부당사항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, 특히 참여자 실적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사업예산과 혼용하여 사용한 사항의 경우 위법·부당함을 인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